



제 3 3 8 회 임 시 회
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3. 3. 10.(금)

2023년도 수시분(2차)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---

의안번호	192
제안일자	2023. 2. 24.
회부일자	2023. 2. 28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  
전문위원실

# 2023년도 수시분(2차)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(2차)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①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 이전 신축

가. 목 적 : 노후 청사 개선 및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강화

나. 사업기간 : 2023년 ~ 2025년

다. 위 치 : 경주시 황성동 1053-206 외 11필지

라. 총사업비 : 3,018백만원(도비) ※ 소유지분 도 100%

-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3년	2024년 이후	비 고
도 비	3,018	-	185	2,833	

○ 세부예산 내역

구 분	공 정	산 출 기 초	금 액 (백만원)
계			3,018
설 계	- 설계비	1식 × 185,000,000원	238
	- 감리비	1식 × 53,000,000원	
건 축	- 건축	1식 × 2,077,000,000원	2,769
	- 전기	1식 × 498,000,000원	
	- 통신	1식 × 194,000,000원	
기 타	- 부대비용	1식 × 11,000,000원	11

마. 취득재산 : 건물 1동(건축연면적 957㎡) ※부지 3,243㎡(도 2,479㎡, 시 764㎡)

바. 주요시설 : 119안전센터 1동

건 물 별	층별	면적(㎡)	주요시설	비 고
계		957		
용황119안전센터	지상1층	478.5	소방차고, 사무실, 장비실 등	
	지상2층	478.5	회의실, 직원대기실, 의용소방대실 등	

사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)

아. 기대효과

- 노후·협소한 청사 이전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후생복지 강화
-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훈련공간 확보

② 축분고체연료 제조·시험 연구시설 건립

가. 목 적 : 축분고체연료의 생산·활용기반 조성 및 녹색 친화적  
축산업 환경 조성

나. 위 치 : 영주시 안정면 목리 64-12, 298-9(축산기술연구소 내)

다. 사업기간 : 2022년 1월 ~ 2023년 12월

라. 총사업비 : 2,610백만원 ※ 소유지분 도 100%

○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3년	2024년 이후	비고
도 비 (특별교부세)	2,610	82	2,528	-	

○ 세부예산 내역

구 분	공 정	산 출 기 초	금 액 (백만원)
계			2,610
설 계	- 설계비	1식 × 82,367,000원	120
	- 감리비	1식 × 37,709,000원	
건 축	- 건축	1식 × 2,198,578,000원	2,490
	- 전기	1식 × 251,526,000원	
	- 통신	1식 × 21,956,000원	
	- 소방	1식 × 17,864,000원	

마. 취득재산 : 건물 2동(건축연면적 591.64㎡) ※ 부지 59,472㎡(도유지)

바. 주요시설 : 제조시설 1동, 보일러실 1동

건 물 별	층별	면적(㎡)	주요시설	비 고
계		591.64		
제조시설	지상1층	523.44	축분 펠릿 제조설비	
보일러실	지상1층	68.20	축분 보일러실	

사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지역제한)

아. 기대효과

- 축분고체연료 제조·시험 연구기반 구축
- 가축분뇨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한 녹색 친화적인 환경 조성

#### 4. 2023년도 수시분(2차)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□ 총괄표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건 수	면 적	금 액	비 고	
취 득	계	부지				
		건물	3	1,548.64	5,628	
		기타				
	1. 매 입	부지				
		건물	3	1,548.64	5,628	신축
		기타				
	2. 교환으로 취득	부지				
		건물				
		기타				
	3. 기타취득	부지				
		건물				
		기타				

## □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백만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격	취득시기 (계약방법)	취득사유 및 소유지분	비고
	지목	소재지	부지면적 · 건물연면적				
계	토지						
	건물	3	1,548.64	5,628			
	기타						
1	건물	경주시 황성동 1053-206 외 11필지	957	3,018	‘24. 2. (제한 경쟁)	- 경주소방서 용황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- 소유지분 : 도 100%	소방본부 회계장비과 (신축)
2	건물	영주시 안정면 목리 64-12	523.44	1,650	‘23. 4. (제한 경쟁)	- 축분고체연료 제조·시험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- 소유지분 : 도 100%	축산기술 연구소 (신축)
	건물	영주시 안정면 목리 298-9	68.20	960			

※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

## 5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2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□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근거는

-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「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.

### □ 검토대상은

#### ① 먼저, 「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 이전 신축」의 건으로

- 취득대상은 경주시 황성동 1053-206 외 11필지 일원에 3,10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2층, 연면적 957㎡ 규모로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.
- 사업부지는 2023년 1월 경주시로부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#### 용황119안전센터 일반 현황

- ▶ **관할구역** : 2개동(황성동, 용강동), 1면(현곡면)
  - 면적 64.75km<sup>2</sup>, 인구 73,673명, 소방대상물 1,680개소
- ▶ **소 방 력**
  - 인 력 : 117명(소방 28, 의용소방대 89)
  - 장 비 : 차량 4대(중형펌프 1, 구급 1, 소형사다리 1, 순찰 1)
- ▶ **현)센 터**
  - 위 치 : 경주시 황성동 1069-1 (679㎡, 시유지)
  - 청 사 : 2층, 연면적 282㎡('91년 준공)

- 용화119안전센터가 신축되면, 노후·협소한 청사 이전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한편, 인력증원('22년 21명 → 31명)에 따른 사무공간 및 훈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② 다음, 「축분고체연료 제조·시험 연구시설 건립」의 건으로

- 취득대상은 영주시 안정면 묵리 축산기술연구소 내 2,61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물 2동, 연면적 591.64㎡의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.

연구시설 건립 추진일정

- ▶ '22. 1. ~ '22. 7. : 사전 조사 및 사업계획(안) 수립
- ▶ '22. 8. ~ '22. 11. : 건축설계 용역 실시
- ▶ '22. 12. : 일상감사 및 계약원사 심사
- ▶ '23. 1. ~ '23. 3. : 건립공사 입찰 및 계약
- ▶ '23. 4. ~ '23. 12. :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, 시험가동

- 해당 사업은 2021년 「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」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,610백만원을 재원으로 건립되는 시설로서,
-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및 활용기반 조성을 통해 ▲가축분뇨의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, ▲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, ▲축산농가의 퇴비화 공간부족 문제 해결, ▲축분으로 인한 악취·토양오염·수질오염 방지 등으로 녹색 친화적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종합의견

-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대상 재산 3건 모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.
  
- 다만,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「축분고체연료 제조·시험 연구시설 건립」의 건의 경우 예산편성<sup>1)</sup> 후 뒤늦게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.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--

1)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(2021. 12. 21.) 및 2022년으로 예산 명시이월